

인사규정시행내규 및 공무원직직원관리내규 개정(안)

□ 개정사유

- 2015년 임·단협 후속조치로서 인사규정개정(안)의 이사회 부의에 따른 시행내규 개정
- 준공무원직(설비, 보안, 주차)의 공무원 직 전환에 따른 후속조치 보완

□ 주요내용

○ 인사규정시행내규

- 가.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 관련 규정 정비 : 58세 → 60세

○ 공무원직직원관리내규

- 가. 보수지급일 조정 : 매월 5일 → 매월 20일
 - 정규직(일반, 서비스, 공무원) 보수지급일을 매월 20일로 일원화
- 나. 제수당 지급기준 일원화
 - 기술수당 지급 자격종류 및 가족수당 지급기준을 일반직 직원과 동일하게 설정
 - 위험수당과 병급이 불가능한 법정관리수당의 현실화(공무원 병급가능) 및 법정관리자 선임회피 방지를 위한 법정관리수당 조정
 - 경비직종의 소정근로시간 설정 : 월 270시간

□ 행정사항

- 인사규정개정(안) 이사회 의결 후 개정내용에 부합토록 공포·시행
 - 인사규정시행내규
- 이사장 결재 후 공포·시행 : 공무원직직원관리내규

붙임 : 내규개정(안) 1부. 끝.

인사규정시행내규종개정내규(안)

(제안요지)

1. 개정이유 :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정년관련 규정 정비

2. 주요내용

가.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 관련 규정 정비

-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공단 정년 관련 규정 개정

나. 부칙신설 : 적용시기

3. 참고사항

가. 제안근거

-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9조(정년)
- 2015년 단체협약서(2015.10.28)
- 규정관리규정 제7조(입안) 및 제10조(절차)

나. 절차 : 이사장 결재 및 후 공포·시행 단, 관련규정(인사규정) 이사회 의결 후 공포·시행 의뢰

인사규정시행내규중개정내규(안)

인사규정시행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8조(정년기준일) 제1항 중 “정년의 기준일은 주민등록상 만58세”
를 “정년의 기준일은 주민등록상 만60세”로 한다.

“부칙”을 다음과 같이 “신설”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,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 단, 제 58조 정년기준일에 관한 사항은 2015년 4월 21일 부터 적용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	비 고
<p>제 58 조(정년기준일) ① 규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의 기준일은 주민등록상 만5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한다.</p>	<p>제 58 조(정년기준일) ① 규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의 기준일은 주민등록상 만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한다.</p>	<p>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공단 정년기준 조정</p>
<p><신 설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,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 단, 제 58조 정년기준일에 관한 사항은 2015년 4월21일부터 적용한다.</p>	<p>개정규정 적용시기 명시</p>

공무직직원관리내규중개정내규(안)

(제 안 요 지)

1. 개정이유 : 공단 정규직 직원의 보수지급일 및 수당지급기준 일원화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

2. 주요내용

가. 보수지급일 일원화

- 정규직(일반, 서비스, 공무직)의 보수지급일을 매월 20일로 일원화

나. 제수당 지급기준 일원화

- 기술수당 지급 자격종류 및 가족수당 지급기준을 일반직 직원과 동일하게 설정
- 위험수당과 병급이 불가능한 법정관리수당의 현실화(공무원 병급가능) 및 법정관리자 선임회피 방지를 위한 법정관리수당 조정
- 경비직종의 소정근로시간 설정 : 월 270시간

다. 부칙신설 : 적용시기

3. 참고사항

가. 제안근거

- 규정관리규정 제7조(입안) 및 제10조(절차)

나. 절 차 : 이사장 결재 및 후 공포 · 시행

공무직직원관리내규중개정내규(안)

공무직직원관리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(보수의지급) 본문 중 “보수는 ---<중략>--- 다음달 5일에 지급한다.”를 “보수는 ---<중략>--- 다음달 20일에 지급한다.” 한다.

제16조(임금)의 “별표1”을 조문변동없이 별지의 “별표1”로 한다.

“부칙”을 다음과 같이 “신설”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,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	비 고
제 15 조(보수의지급)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- <중략>- 다음 달 5일에 지급한다. 다만,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한다.	제 15 조(보수의지급)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- <중략>- 다음 달 20일에 지급한다. <현행과 같음>	정규직(일반, 서비스, 공무원)의 보수지급일 일원화
제16조(임금) ① 공무원 직원의 임금은 예산범위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매 회계연도 초에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.	제16조(임금) ① 공무원 직원의 임금은 예산범위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매 회계연도 초에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.	직군간 차별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지급 기준 일원화, 법정수당 현실화 및 소정 근로시간 명기
<u><신 설></u>	부 칙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,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	개정규정 적용시기 명시

(현 행)

<별표 1> (제16조 관련)

2. 지급기준

(단위 : 원)

구분	종류 및 금액		시기	비고	
(1)	기술수당	기술사	50,000	매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한 기술자격 및 면허 취득자로 해당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부서의 해당 직종 근무자에게 지급하되 기술자격 증명서류를 급여담당부서에 등록한 1개 자격증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 지급(중복지급 불가)
		기사	30,000	매월	
		산업기사	20,000	매월	
(2)	위험수당		50,000	매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기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고압 3,300볼트 이상 전력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 및 유류 보일러 취급 직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 지급
(3)	법정관리수당		<u>30,000</u>	매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법정관리자 선임직원 중 위험수당 미수혜자에 한하여 예산범위내지급
(5)	가족수당	배우자	40,000	매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 지급가능 · 자녀의 경우 인원수 무관 및 세째이상 자녀는 월8만원(2012년 이후 출생자는 월 3만원) · 부양가족의 해당여부는 보수규정 준용
		기타 부양가족	20,000	매월	
(7)	시간외수당		통상 임금 × 1.5/209 × 시간	매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취업규칙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명령을 받아 근무한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(단, II직렬은 시간당 통상임금×시간 ×1.5×365일÷2(격일)÷12월
(8)	야간수당		통상 임금 × 0.5/209 × 시간	매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야간(22시~익일 06시)시간대에 근무명령을 받아 근무한 직원에 예산 범위 내 지급 (단, II직렬은 시간당 통상임금×4시간 ×0.5×365일÷2(격일)÷12월

(개정)

<별표 1> (제16조 관련)

2. 지급기준

(단위 : 원)

구분	종류 및 금액		시기	비고	
(1)	기술수당	기술사, <u>기능장</u>	50,000	매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한 기술자격 및 면허 취득자로 해당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부서의 해당 직종 근무자에게 지급하되 기술자격 증명서류를 급여담당부서에 등록한 1개 자격증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 지급(중복지급 불가)
		<u>기사</u> , <u>산업기사</u> , <u>간호사</u> , <u>영양사</u>	30,000	매월	
		<u>기능사</u> , <u>간호조무사</u>	20,000	매월	
(2)	위험수당		50,000	매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기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고압 3,300볼트 이상 전력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 및 유류 보일러 취급 직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 지급
(3)	<u>법정관리수당</u>		<u>80,000</u>	매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법정관리자 선임직원 중 위험수당 미수혜자에 한하여 예산범위내지급
(5)	가족수당	배우자	40,000	매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 지급가능 · 자녀의 경우 인원수 무관 및 세째이상 자녀는 월8만원(2012년 <u>이전</u> 출생자는 월 3만원) · 부양가족의 해당여부는 보수규정 준용
		기타 부양가족	20,000	매월	
(7)	시간외수당		통상임금× 1.5/209× 시간	매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취업규칙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명령을 받아 근무한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(단, Ⅱ직렬은 시간당 통상임금×시간 ×<u>1.5/270×365일</u>÷2(격일)÷12월
(8)	야간수당		통상임금× 0.5/209× 시간	매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야간(22시~익일 06시)시간대에 근무명령을 받아 근무한 직원에 예산 범위 내 지급 (단, Ⅱ직렬은 시간당 통상임금×4시간 ×<u>0.5/270×365일</u>÷2(격일)÷12월